



서울고등법원

제 8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5누45375 배분계산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 공사 2. [redacted] 시 3. [redacted] 시
제 1 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7279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4. (피고 1, 2에 대하여) 2015. 12. 11. (피고 3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redacted] 공사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사건에서 2014. 9. 25. 한 배분계산처분 중 피고 [redacted] 시에 대하여 423,389,320원을 초과하여 한 배분계산처분 및 피고 [redacted] 시에 대하여 한 360,715,675원의 배분계산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redacted] 시는 원고 B에게 32,576,766원, 원고 A에게 21,717,844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redacted] 시는 원고 B에게 216,429,405원, 원고 A에게 144,286,270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redacted] 공사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사건에서 2014. 9. 25. 한 배분계산처분 중 피고 [redacted] 시에 대하여 423,389,320원을 초과하여 한 배분계산처분 및 피고 [redacted] 시에 대하여 한 360,715,675원의 배분계산처분을 각 취소한다(항소장 기재 '36,715,675원'은 '360,715,675원'의 오타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9행 "압류하였다" 다음에 "(이하 아래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하고,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이 사건 각 법정기일'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7행의 "위 각 조세채권으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로 고친다.

③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바. 위와 같은 공매절차가 개시될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관한 과세기초문서는 기간 경과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피고 경주시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D에 대한 체납 내역을 전산자료(을나 제3호증)로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세목	과세대상	납세고지	납기	세액합계(가산금 포함)
1	취득세 (부동산)	O 외 3	1995. 11.	1995. 11. 30.	10,829,970원
2	재산세 (건축물)	P	1995. 6.	1995. 6. 30.	67,070원
3	종합토지세 (1994년)	Q외 18	1994. 10.	1994. 10. 31.	310,444,330원
4	종합토지세 (1995년)	Q외 18	1995. 10.	1995. 10. 31.	253,357,260원

"

④ 제3면 제20행의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을나 제3호증"을 추가한다.

⑤ 제4면 제2행 다음에 "(1) 첫 번째 주장"을 추가한다.

⑥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2) 두 번째 주장

실령 D를 E의 과점주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고지가 이 사건 각 법정기일에 D에 대하여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망 C의 1996. 2. 14.자 근거당권보다 지방세법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 및 그에 따른 배분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⑦ 제4면 제16행 "나"를 "다"로 고친다.



⑧ 제4면 제16행 다음에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⑨ 제6면 제3행의 "사실" 다음에 "④ E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2년도부터 각종 국세 체납 등으로 수 개의 압류 및 다수의 채권자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⑤ D는 사실상 1993년경부터 무자력인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된 사실"을 추가한다.

⑩ 제6면 제5행 "없다." 다음에 "따라서 D를 과점주주로 보아 한 각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⑪ 제6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규정



에서 정한 기준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고, 배당을 할 때에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2483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그 조세우선권 부여 기준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에서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⑦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 ■■■■■시가 이 사건 각 법정기일에 각 조세채권에 관하여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납세고지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달리 이 사건 각 법정기일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성립 및 그에 관한 각 납세고지의 발송은 이 사건 각 법정기일 무렵에 실제로 이루어져 망 C의 1996. 2. 14.자 근저당권登記일보다 앞섰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먼저 D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시가 1987. 8. 8.자로, 피고 ■■■■■시의 1999. 11. 15.자로 각 압류 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위 피고들의 각 조세 부과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14. 9. 25.자 이 사건 배분처분 및 그에 따른 공매절차가 모두 종료하기까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이 점에서 이 사건 각 조세 채권의 납세의무자인 D는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위 조세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로 체납액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성립 전 이미 E 및 D는 모두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E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D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1994년 귀속 종합토지세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7에 의하면 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이 사건 법정기일과 같은 1994. 6. 1.로, 망 C의 위 1996. 2. 14.자 근저당권 등기일보다 앞섬은 의문이 없다.

④ 이 사건의 경우 각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약 20년 가량 경과하여 현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기초문서가 모두 폐기되어 구체적인 납세고지일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할 1999. 11. 15. 당시에 그와 같은 과세기초문서가 폐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압류등기는 본래의 과세기초문서를 토대로 마쳐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기간의 경과로 위와 같은 문서는 폐기하더라도 본래의 과세기초문서에 따라 채납내역 등에 관한 전산자료를 남기는 것이 과세관청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보인다.

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채납내역에 관하여 납세고지 연월과 그 납부기한에 대한 전산자료가 남아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배분처분 당시에는 과세기초문서의 원본이 모두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산자료를 기초로 피고 경주시가 이 사건 배분처분을 위하여 교부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교부청구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⑥ 더구나 이 사건 각 조세 채권 중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1995년 귀속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와 제234조의 17에서 각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규정하고 있어 위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고지는 법정된 과세기준일과 마지막 납기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과세관청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인다. 그런데 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이 사건 각 법정기일은 위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⑦ 그리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1995년 귀속 취득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취득 시이고(법 제29조 제1항)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법 제120조 제1항) 그와 같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법 제121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빠진 E과 D가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세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시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취득세의 납세고지는 '1995. 11.', 취득세의 납기는 '1995. 11. 30.'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서 상의 법정기일인 1995. 11. 10.에 그와 같은 납세고지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단, 1994. 6. 1.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은 망 C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6. 2. 14. 자 근저당권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구 지방세법 제31조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⑫ 제6면 제6행부터 제9행 사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피고 ■■■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9. 11. 15.자 압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선행처분들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배분처분에 승계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4-29

목 록

1. ■■■시 L 임야 4,865㎡
2. ■■■시 M 임야 343㎡
3. ■■■시 N 임야 53㎡. 끝.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81조(배분 방법)

-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4-29

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구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본장에서 국세라 한다)는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93.12.27>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4-29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으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③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4조의17(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구 지방세법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가 갱신되는 때
(중략)
 6.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

제31조(지방세의 우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마.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34조의17(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4조의18(부과징수방법등)

①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끝.